

#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

- 2021년 4월 현재 기준 -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해당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<br>기간           | 귀화신청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혼인귀화<br>(국적법6조2항)        |          |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<br>※ 단, 혼인기간, 가족형태, 자녀양육 여부 등을<br>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u>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<br/>경우 약 9개월</u> | 약<br>18개월<br>(9개월) | 2019년 10월 이전<br>( <u>2020년 7월 이전</u> ) |
| 특별<br>귀화<br>(7조<br>1항1호) | 면접<br>대상 | 국적회복/귀화자의 자녀<br>미성년 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<br>18개월          | 2019년 10월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접<br>면제 | 만 15세 미만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<br>8개월           | 2020년 8월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간이귀화<br>(6조1항1~3호)       |          |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<br>18개월          | 2019년 10월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<br>12개월          | 2020년 4월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<br>18개월          | 2019년 10월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귀화<br>(5조)             |          |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<br>(F-5)자격을 소지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<br>18개월          | 2019년 10월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적회복<br>(9조)             |          | 국적회복 신청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<br>6개월           | 2020년 10월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【유의 사항】

1.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(또는 불허) 여부 결정일  
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, 개인별로 차이\*가 있을 수 있음

\*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, 실태조사  
(재조사) 필요 여부, 보완서류, 관계기관 의견조회(범죄·수사경력, 신원조회) 등  
- 장기 출국,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

2.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 
국적을 취득함(수여식 일시·장소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)